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93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20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64호(號)

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3(大正 12)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88호(號) 당사(當社), 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) 화물연대 운수규칙(貨物連帶運輸規則) 중(中) 아래[左]과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2월 20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3조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화물(貨物)은 철도(鐵道)에서 특히 승낙(承諾)한 경우에 한(限)하여 그 운송(運送)을 인수(引受)함으로 함.

1 철도성선(鐵道省線)과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광궤선(廣軌線) 또는 만철선(滿鐵線) 간(間)

가 1개(箇) 중량(重量) 3영국톤(英噸), 용적(容積) 3백(百) 입방척(立方尺) 또는 소화물급(小貨物扱)에 있어서는 길이[長] 14척(尺: 시모노세키[下關]에 발착(發著)한 것은 길이[長] 18척[尺]), 차급(車扱)에 있어서는 길이[長] 30척을 초과(超過)한 것

나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가 정(定)한 급외품(級外品) 제1종(種) 화약류(火藥類)

다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2종(種) 위험품(危險品)

라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3종(種) 가축(家畜: 말[馬]를 제[除]함)

마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4종(種) 철도차량(鐵道車輛)

바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5종(種) 사체(死體)

사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6종(種) 특종고가품(特種高價品)

아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7종(種) 오염(汚穢)한 물품

자¹⁾ 임시열차(臨時列車)로 운송(運送)하는 화물(貨物)

2 철도성선(鐵²⁾道省線)과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협궤선(狹軌線) 간(間)

가 소화물급(小貨物扱)에 있어서는 1개(箇) 길이[長] 8척(尺), 중량(重量) 1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백(百) 입방척(立方尺), 차급(車扱)에 있어서는 1(箇) 길이[長] 30척, 중량(重量) 3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3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

나 전호(前號)의 나, 다, 라, 마, 바, 사, 아, 자와 같음.

1) 역자: '자'가 생략되어 있다.

2) 역자: '鐵'자가 생략되어 있다.